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07
----------	-------

발의연월일 : 2018. 10. 31.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③ · ④ (생 략)</p> <p>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 ④ (생 략)</p> <p>⑤ 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u>당해</u>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생 략)</p> <p>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u>당해</u>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p>	<p>-----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해당</u>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 ----- ----- ----- ----- ----- <u>해당</u> ----- ----- ----- ----- ----- -----.</p>
--	--

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권리)

해

당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당해</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u>해당</u> -----.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생략)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u>당해</u>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u>당해</u>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② ----- <u>해당</u> ----- ----- ----- <u>해당</u> ----- ----- ----- -----.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u>당해</u>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보고) ----- ----- ----- ----- <u>해당</u> ----- ----- -----.